

1.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자전거도로 노선 구분 방법을 명확히 하여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제한·금지 구간 고시방법 (안 제3조의2)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6.9 공포, 12.10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제한·금지 구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의 고시방법을 명시하고 고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자전거도로 노선 구분 기준 명확화(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지방자치단체별로 혼선이 있는 자전거도로 노선 구분 방법을 명확히 하여 노선 구분의 통일성과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31. ~ 9.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고시)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지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 관보 게재
2. 도로관리청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 게재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선번호, 노선명
2. 기점, 종점, 주요 경유지
3. 자전거도로 유형 및 연장
4. 해당 자전거도로의 노선도면(축척 3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

5.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전거도로가 차도를 기준으로 양쪽에 설치된 경우 2개의 노선으로 한쪽에 설치된 경우(양방향 자전거도로 포함) 1개의 노선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4호 중 “비고란에는 보도가 설치된 일반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경우 “양쪽 설치”인지 “한쪽 설치”인지를 선택하여 적는다”를 “자전거도로가 차도를 기준으로 양쪽에 설치된 경우 2개의 노선으로 한쪽에 설치된 경우(양방향 자전거도로 포함) 1개의 노선으로 작성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고시)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u> <u>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u> <u>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 관보 게재</u> <u>2. 도로관리청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 게재</u> <u>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u>1. 노선번호, 노선명</u> <u>2. 기점, 종점, 주요 경유지</u> <u>3. 자전거도로 유형 및 연장</u> <u>4. 해당 자전거도로의 노선도면 (축척 3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u> <u>5.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유</u> <u>6. 그 밖에 필요한 사항</u>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4.29>

고시 제 호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변경·폐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노선명	노선번호	자전거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km)	자전거도로 너비(m)	주요 경유지	지정 (변경·폐지) 사유
				기점	종점				

21130-00211일

364mm×257mm

(인쇄용지(2급) 60g/m²)

※ 작성요령

1. 노선명은 일반도로 노선명을 적되, 일반도로 노선명이 부여되지 않은 공원이나 하천 둔치 등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고유명칭을 사용하여 노선명을 정한다.
2. 노선번호는 일반도로 노선번호(예: 도시계획 도로대로 1류 10호선, 군도 4호선, 농어촌도로 101호선 등)를 적는다. 다만, 노선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공원이나 하천 둔치 등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노선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3. 기점·종점란은 자전거도로의 기점·종점과 연결한 지번을 적는다.
4. 자전거도로가 차도를 기준으로 양쪽에 설치된 경우 2개의 노선으로, 한쪽에 설치된 경우(양방향 자전거도로 포함) 1개의 노선으로 작성한다.

자 전 거 도 로 대 장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의 종류	도로구간		주요 경유 지	총길 이 (km)	도로 현황		이용활성화사업 현황(단위 : km, 백만원)											
			일반 도로 너비 (m)	자전거 도로 너비 (m)			전체계획		년까지		년		년		년 이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21130-00311일

364mm×257mm

(인쇄용지(2급) 60g/m²)

※ 작성요령

1. 노선명은 일반도로 노선명을 적되, 일반도로 노선명이 부여되지 않은 공원이나 하천 둔치 등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고유명칭을 사용하여 노선명을 정한다.
2. 노선번호는 일반도로 노선번호(예: 도시계획 도로대로 1류 10호선, 군도 4호선, 농어촌도로 101호선 등)를 적는다. 다만, 노선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공원이나 하천 둔치 등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노선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3. 기점·종점란은 자전거도로의 기점·종점과 연결한 지면을 적는다.
4. 자전거도로가 차도를 기준으로 양쪽에 설치된 경우 2개의 노선으로, 한쪽에 설치된 경우(양방향 자전거도로 포함) 1개의 노선으로 작성한다.